공 개

의안번호	제 147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5. 20. (제 10 차)

의결사항

㈜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5. 20.

1. 의결주문

㈜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6.2.6.부터 비상장법인 ㈜아이에이치큐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증권발행제한 : ㈜아이에이치큐 [前유가증권상장법인] 1월

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164조 제2항 제2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, 제175조 제1호

나. ㈜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산정내역 : <붙임 2>

(별지)

㈜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아이에이치큐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아이에이치큐 [前유가증권상장법인]

- 대표이사 : ☆☆
- 사업자 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-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△△△ △△△ △△△-△(△△△)

□ 조치이유

○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안되는데도,

- ㈜아이에이치큐는 ◎◎◎◎◎㈜를 인수인으로 하여 제6회차(500억원)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2021.6.14.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,

-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

<붙임 1>

관 계 법 규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6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)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(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)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9.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·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

제164조(조사 및 조치)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,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2.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
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)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4.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

제175조(금융위원회의 조치) 법 제1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

3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제30조(증권의 발행제한등)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[별표 3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5.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가.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(1) 부터 (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(4)에 따른다.

(3)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

(4)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(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)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2월	9월	6월
해당사항 없음	9월	6월	3월
하향조정사유 발생	6월	3월	1월

<붙임 2>

㈜아이에이치큐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「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」 [별표 제3호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의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(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[별표 제2호]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)

≪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≫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2월	9월	6월
해당사항 없음	9월	6월	3월
하향조정사유 발생	6월	3월	1월

Ⅱ. 산정결과

□ **증권발행제한 조치 : 1월**

구 분	중요도	감안사유	기간
2021.6.14. 주요사항보고서(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) 제출의무 위반	하	하향조정 사유	1월

※ (첨부) : 증권발행제한 조치 세부산정내역

(첨부)

증권발행제한 조치 세부산정내역

□ 위반행위의 중요도 :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 적용: **위반행위는 「하」에 해당**

구분	판단요소	중요도	적요
i	주가변동률	**'하'**	위반일 전후 15거래일간 주가변동률이 50% 미만에 해당(30.63%)하는 경우 '하' 등급 적용*
ii	주요경영사항	-	해당사항 없음
iii	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	-	해당사항 없음
iv	증권신고서	-	해당사항 없음
v	공개매수신고서	-	해당사항 없음
vi	5%보고서	-	해당사항 없음

* 제출일('21.6.14.) 전후 각각 15거래일간 주가변동률 :
= {(당해종목 최고주가/최저주가) × 100} - {(종합주가지수 최고값/최저값) × 100}
= {113,002('21.5.26.) / 83,288('21.6.23.) × 100} - {3,303('21.6.25.) / 3,144('21.5.24.) × 100}
= 30.63% (50% 미만이므로 중요도 「**하**」에 해당)

□ 감안사유 : **하향조정**

구분	조정기준	해당여부
상향조정 사유	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	해당사항 없음
	공시위반 조치(경고, 주의 제외) 후 1년 이내 과징금 부과	해당사항 없음
하향조정 사유	위반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신고	**위반동기 중과실**
	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한 경우	회생절차 개시

※ (참고) 과징금 산정내역

(단위: 원)

구 분	산정금액(2021.6.14. 위반)	비 고
Ⅰ. 자본시장법상 법정한도	**280,622,016**	Min[직전 사업연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, 20억원]
Ⅱ.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	**49,035,888**	
1. 기준금액	**8,172,647,953**	Max[제출일 전후 15일간 일일평균거래금액, 10억원]
2. 기본과징금	49,035,888	Max[(1), (2)]
(1) 부과비율 적용	49,035,888	기준금액 × 부과비율(100분의 0.6)
(2) 최저부과액 적용	-	해당사항 없음
3. 감면	-	해당사항 없음
Ⅲ. 과징금 부과액	49,035,888	Min[Ⅰ, Ⅱ]
Ⅳ. 10만원 단위 미만	35,888	절사 금액
Ⅴ. 과징금부과 결정금액	**49,000,000**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	공 시 심 사 국
연 락 처	02-2100-2688	02-3145-8470